

제재조치 공지

CME-18-0856-BC
발효일: 2018년 12월 7일

문서번호: [CME-18-0856-BC](#)

회원여부/비회원: 하나금융투자

거래소 규정 위반: **432. 일반 위반 (일부)**

다음의 경우는 규정 위반이다:

I. 이사회, 위원회, 또는 거래소 직원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L.2. 심리 또는 일체의 조사와 관련한 모든 질문에 완전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장부와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

Q. 거래소의 이익이나 안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거래소의 존엄성이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

W. 거래소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있어 직원과 대리인을 성실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당사자.

조사결과: 아래 제재의 근거가 되는 규정 위반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하나금융투자 (이하 “하나”)가 제시한 합의 제안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시카고상업거래소 영업행위위원회(BCC) 위원단 (“위원회”)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가 당사 고객의 거래 활동에 대한 거래소의 조사를 다음의 행위를 통해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고객 계좌를 거래하기 위해 등록한 Tag 50 ID 기록 및 Tag 50 ID 사용자들의 로그인/로그아웃 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감사 추적 기록 및 고객 계좌 정보를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와 규약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2) 계좌 소유권, 계좌 거래권한 보유자, 감사 추적 데이터 및 계좌 거래 내역서와 관련한 기록을 요구한 본 거래소의 여러 조사 요청에 적시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데에 실패.

그 결과로 위원단은 하나가 규정 432.I., 432.L.2., 432.Q. 및 432.W.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재 내용: 해당 합의 제안에 따라, 또한 과거 하나를 대상으로 집행된 시장접근 중지 (Summary Access Denial) 조치를 고려하여, 본 위원단은 하나로 하여금 \$425,000의 벌금을 본 거래소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발효일: 2018년 12월 7일